의안번호	제2822호		
의 결			
연 월 일	(제 회)		

의	
의 결 사 항	
사	
항	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	의	자	김향숙	의원	등	4인
발의연월일		2024.	8.	23.	ı	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향숙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22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 김향숙, 김석한, 허옥희.

최두임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UN이 재정립한 평생연령 기준을 반영 및 참고하여 고성군 청년의 연령대를 현행 18세 이상 45세에서 18세 이상 49세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지원분야에서 소외되는 청년층을 줄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단계적인 청년층의 연령대를 상향하여 40대 젊은 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의 정의 중 연령대를 확대함(안 제2조제1호)

- 18세 이상 45세 이하(현행) →18세 이상 49세 이하(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39호

- 예고기간: 2024. 8. 23.(금) ~ 2024. 8. 28.(수)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**본문**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45세"를 "49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	제2조(용어의 정의)
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	
같다.	
1. "청년"이란 18세 이상 <u>45세</u>	1 <u>49세</u>
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	
개별사업의 관계 법령 규정에	
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.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